

일한공동연구회에서의 보고 기본내용

1993. 12

니이미 다카시 (新美 隆·변호사)

「째마 : 실행의 구체적대책의 제언」

1. 머리말

올해 8월4일의 일본정부의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하여」의 조사결과와 발표, 관방장관담화에 이어 호소가와수상의 발언등에 비추어보며는 더 한층의 정확한 조사가 역사적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계속되어야 할것은 물론이고 한편에서 피해자의 손해, 고통의 회복조치의 구체화안을 속히 제시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관방장관 담화중에도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사과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리며……점그리한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표시하겠는가 하는 것은 유식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에 있어서도 국회쪽에서도 구체적인 실행책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담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 이 공동연구회와 같은 활동에서 제시되는 의의, 영향력은 크다.

실행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될것은

- ①피해자는 국제불법행위, 국제법상의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며 인권의 중대침해의 피침해자라는 전제밑에서 개인의 권리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 ②한국의 「종군위안부」만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하여 성적노예로 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로서 연구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2가지 점이다.

2. 선례에서 본 방법의 분류 (피해, 피해자의 인정)

- 1) 국내법에 의한 특별입법에 따라 개개인의 인정은 행정행의 재정에 의한다 (대만인 전군인, 군속에 대한 특별2법) .
- 2) 의회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그 손해, 배상방법과 함께 피해자인정방법을 포함한 입법을 한다 (미국에 있어서의 일개인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의 예) .
- 3) 피해자단체와 정부사이에 협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정은 그 단체에 일임한다 (캐나다에 있어서의 일개인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과 서독일에 있어서

의 유다양인회의의예로의 보상금 일부 지불의 예) .

- 4) 준사법기관을 설립하고 개개의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리고 개적으로 판정한다 (제1차세계대전후의 혼합중재재판소의 실례. 1905년의 영·불·독대 일본의 중재판결〈가옥세사건〉의 예등) .

기타 예는 물론 일본의 국내재판소에서의 제소, OO기금구상과 개별교섭등이 생각될 수 있으나 해결례는 없다.

3. 중재재판의 방식에 대하여

- (1)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충분성은 남는다고 하여도)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증언등을 종합한 사실에서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손해배상의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대의 국제인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것이지만 그 구체적내용을 누가 어떻게하여 확정하는가가 실행방법상의 문제이다. 히어링을 들었다 하여도 일본정부가 제시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그대로 믿을 필요는 물론 없거니와 그렇다 해서 피해자측의 요구를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그냥 받아드린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사실 소송의 존재를 도망칠 구멍으로 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도 그냥 말만으로 옮길수 있다고는 생각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의 표시방법을 모색한다고 한 이상 양식있는 제3자기관의 판정에 맡기는 것을 통하여 그 성의를 실현해야 한다. 「위안부」문제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피해자개인과 일본정부사이의 문제이며 이를 종래의 선례에 따라 또한 가장 공평한 수속에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항 4)의 혼합중재재판이 이에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 (2) 제1차세계대전후의 혼합중재재판 벨사이유조약 및 그 외에 평화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중재재판이며 교전국 일방의 국민이 적국영토내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배상청구를 주로 판정했다. 피해자는 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상청구로 제기할 수가 있었다. 청구권을 주장하는 사건은 수만에 달했으며 각 중재재판소는 약 10년간에 걸쳐 그 처리의 임무를 끝내었다. 개인의 독립된 신고의 권리가 인정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설의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재판소규정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대해 중재재판소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문제해결의 적합한 구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사건의 당사자로 될것이 인정되어있지 않는 (중재판소규정 34

조) 이상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를 국제법상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방식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유엔헌장상에도 그에 대한 부탁의 자유가 인정되어있는 것이다 (헌장 95조)

혼합중재재판소 (Mixed Arbitral Tribunal) 라고 불리는 것은 국적을 달리 하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이고 그 중 2명은 관계당사국정부가 임명하고 다른 1명은 제1차대전중의 중립국국민에 의하여 선립되어 재판장의 지위에 올랐다.

독일국은 혼합중재재판소에 그 심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참고자료들을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 상세한 규정은 벨사이유조약 304조를 참조 할것. 어떻든지간에 사건의 대상, 구성, 판단기준 및 수속에 대해서는 2나라간 (혹은 관계국간) 에 의하여 체결해야 할 부탁합의 (컴프리미- , agreement of referince, 독일의 경우는 앞에 기술한 조약이 그에 해당된다) 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혼합중재재판에 관한 문헌, 각 국제법교과서에 간단히 소개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헌이 있다.

田岡良一 「혼합중재재판소와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法学論集 1934년
入江啓四郎 「국제법상의 배상보상처리」 成文堂 1974년

Journal of Comparative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third series. Vol. 5 ~ vol. 7 1923~1926)

4.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혼합중재재판소의 설립구상

(관계각국간의 부탁합의가 생각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나 이제까지의 경위를 보며는 일한간에 있어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실현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한합의를 상정한다)

(1) 재판소의 구성

일본측, 한국측이 각각 3명의 재판원을 선임한다. 법률실무가, 역사학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선임에 있어서는 관계단체, 유식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인권위원회등의 추천에 의하여 유엔인권전문가 〇명을 제 3국 심판원으로서 구성한다.

(2) 사건의 대상

구일본군에 의하여 「위안부」로 된 모든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해자의 출신지는 상관없으나 일본국민은 제외한다)

(3) 판단기준

이미 발표된 일본정부의 성명, 당국자의 발언등 이외에 그 합의에 있어서 일본정부에 의하여 한걸음 전진한 성명이 가능하며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

하는 사실의 승인은 재판소에 있어서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한다. 국제 인권법의 현재의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기준에 응당 의거할 것과 국제사법 재판소의 규정 38조 1항에 의한다. 다만 그것에 의하지않는 경우는 같은 국정 2항의 형평 및 선(善)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수속상의 주로 되는 것

- ①일본정부는 심리에 필요하는 일체의 편의 및 자료의 제공을 의무로 한다. 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모두 일본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 ②피해자측의 입증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배상액의 산정(算定)에 있어서는 대리인, 변호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된다.
- ③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한다. 심리의 경과는 모두 기록된다. 재판소는 피해자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심리할 수가 있다.
- ④판정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있는 날부터 〇개월이내로 내린다.
- ⑤판정의 내용은 일본정부를 구속한다. 피해자측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는 재심리의 기회가 부여된다.
- ⑥재판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타의 조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구제의 범위에 구속당함이 없는 권고를 일본정부에 할 수가 있다.
- ⑦현재 일본의 국내재판소에서 소송중의 피해자도 신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신고에 의하여 소송상의 권리는 좌우되지 않다.
- ⑧중재재판소에서 일본정부는 시효의 원용(援用)을 할 수 없다.
- ⑨중재재판소는 이미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판정을 인용하여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판정할 수가 있다.
- ⑩중재재판소는 그 판단에 있어서 「중군위안부」 청구사건의 모든 종료를 선언을 한다. 기록은 개인적 사정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된다.